



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

2025년 담양군의회

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인력관리계획



담 양 군 의 회
[의 회 사 무 과]

차 례

I. 목	적	3
II. 관련규정		3
III. 인사운영 목표 및 운영 방향		3
IV. 세부 운영계획		4
1.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		4
2.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		5
3.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인사 운영		6
4.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		8
5.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교류		8
6. 실적과 능력 중심의 평정		9
7. 균형있는 인사운영		11
8. 2024년 인력충원 계획		12
9.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훈련		12
10. 기타 인사관리		13

2025년 담양군의회 인사운영기본계획 및 인력관리계획

I 목 적

- 인사운영의 기본방향, 인사기준, 인사시기 등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·공개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의 근거마련

II 관련규정

- 「지방공무원법」
- 「지방공무원법 임용령」
-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
- 「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」
- 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 등

III 인사운영 목표 및 운영 방향

1. 목표 :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

2. 인사운영 운영 방향

-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조직 안정화 도모
- 비위행위 무관용 원칙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
- 인사관련 부정청탁 불이익 조치로 인사 부패행위 근절
-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관리 운영으로 일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
-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

IV 세부 운영계획

1.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

① 정례적인 인사시행

- 정기인사 : 연 2회[상반기(1월), 하반기(7월)]
 - * 조직개편 및 퇴직 등에 따른 승진 및 인사교류 등
- 수시인사 : 요인 발생시
 - * 신규임용, 인사교류 등으로 결원 보충 시

② 인사예고제 실시

- 시 기 : 정기인사는 최소 3일 전, 수시인사는 사안에 따라 예고
- 방 법 : 자료게시(새울행정시스템/인사마당/인사발령)
- 범 위 : 인사배경, 인사시기, 직렬·직급별 승진대상 인원 등

③ 인사정보 공개

- 개인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공개
 - 공개시기 : 연 2회 (정기 근무성적평정 후)
 - 공개방법 : 인사행정정보시스템(인사랑)/인사정보
 - 공개대상 :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경과자
 - 공개기간 : 3일간 * 개인순위만 열람 가능
- 인사정보의 실시간 공개
 - 공개시기 : 연중(단, 본인 정보에 한함)
 - 공개대상 : 개인별 인사기록, 교육훈련, 호봉, 제증명 발급신청 등
 - 공개방법 :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화된 개인인사정보 열람

④ 인사고충 상담 등 직원고충 해소

- 인사 관련 직원 애로사항을 개인별 면담을 통해 적극 해소
-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

2.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

① 공무원 6대 비위행위 무관용 원칙

○ 6대 비위행위*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인사페널티 부여

**6대
비위행위**

**금품·향응 수수, 공금 횡령·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
음주운전**

-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
 - 강등·정직 : 18개월 + 처분기간 + 6개월
 - 감봉 : 12개월 + 처분기간 + 6개월
 - 전책 : 6개월 + 6개월
- 전보조치 : 6대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하향 전보
- 근무성적평정 하위등급 부여: 중징계를 받은 경우 “가” 평정 등급을 부여하고, 경징계를 받은 경우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시 하위평정
-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: 징계처분(징계요구 중인 자 포함)을 받은 자는 1년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

○ 직위해제

-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람
-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 (약식명령이 청구된 공무원은 제외)

○ 직무와 관련된 금품행위 연대책임제 강화

- 비위행위자 : 직위해제
- 직근상급자 및 차상위상급자 : 인사조치

○ 정부포상 및 표창(장관, 도지사, 군수, 의장) 추천제한

○ 비위행위자는 청렴교육 의무이수 : 20시간

② 인사관련 청탁·알선자 불이익 조치

○ 승진, 전보 등 인사에 대해 직위 또는 제3자를 이용한 부당한 개입 행위 시 청탁 및 알선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(승진, 전보인사 배제)

* 본인의 인사 고충은 인사상담을 통해 진행

③ 갑질 가해자 인사상 불이익 처분

- (관리자 하향전보)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비위정도에 따라 전보조치할 수 있으며,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조치 요청가능

* ‘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 부당행위(갑질)’ 징계기준 신설[지방공무원 징계규칙(2022.1.4.)]

3.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인사 운영

① 일반승진(심사승진)

- 공통사항
 - 승진소요 최저연수¹⁾에 도달하고 승진임용 범위²⁾에 해당하는 사람
- 5급 이상 승진
 - 승진후보자 순위 명부를 바탕으로 관리자로서의 능력과 경력·자질·청렴성·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- 6급 이하 승진
 - 담당업무 비중, 업무 수행 능력, 근무성적, 경력평정,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

※ 교육훈련 실적 미충족자는 승진에서 제외

1) 승진요소 최저연수 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1항)

구 분	5급	6급	7급 · 8급 · 9급
최저연수	3년 이상	2년 이상	1년 이상

2) 승진임용 배수범위 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)

임용하려는 결원 수	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
1명	결원 1명당 7배수
2명	결원 1명당 5배수
3명~5명	결원 1명당 4배수
6명~10명	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+ 20명
11명 이상	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+ 35명

② 근속승진

○ 재직요건 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1항)

구분	재직요건	가능인원	시기	비고
일반직 7급	11년 이상	근속승진 후보자의 직렬별 인원의 40%에 해당하는 인원	수시	
일반직 8급	7년 이상	재직요건 충족인원	수시	
일반직 9급	5년 6개월 이상	재직요건 충족인원	수시	

○ 승진소요연수 도달자 중 승진배수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승진임용

○ 승진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, 인사위원회에서 근속 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아야 함

③ 승진임용의 제한

○ 징계관련자 제외

-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, 징계처분, 직위해제, 휴직 중에 있는 자
-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

구분	정직·강등	감봉	견책
승진제한기간	18개월	12개월	6개월

* 공무원 6대 비위행위 및 소극행정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

- 교육훈련 미이수자 승진 제한
 -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
- 승진후보자명부 및 승진임용배수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, 배수 범위는 근속승진 대상인원을 기준으로 산정
- *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이 아닌 강임자의 경우, 배수범위와 관계없이 근속승진 가능
-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,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아야 함

4.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

① 보직관리

-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, 훈련, 근무경력,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위에 보직
- 복수직렬은 당해 직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직하되, 직렬 간 인사운영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정안배
- 회계 부정발생 방지를 위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동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보직변경

5.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교류

① 집행부와 인사교류

- 의회·군 간 상호 협조 체계 증진, 공무원 고충 해소
- 근거 :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담양군의회·담양군 업무협약 (2021.12.20.)
- 희망자 파악 후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기·수시 인사 시 인사교류 실시

② 희망교류¹⁾

- 교류대상 : 직렬, 직급, 희망기관 및 지역 등의 교류조건이 동일한 자
- 교류방법 : 상호교류

< 상호교류 예외 >

(일방전출) 전라남도·중앙부처 등 상급 기관으로 전출, 부모봉양·가족 간호를 위한 연고지 근무 등 (*사전 미협의 시 일방전출 불가)

- 전출제한
 - 휴직, 징계처분 중 직위해제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자
 -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 - 예측하지 못한 결원 발생, 업무누수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

6. 실적과 능력 중심의 평정

① 근무성적 평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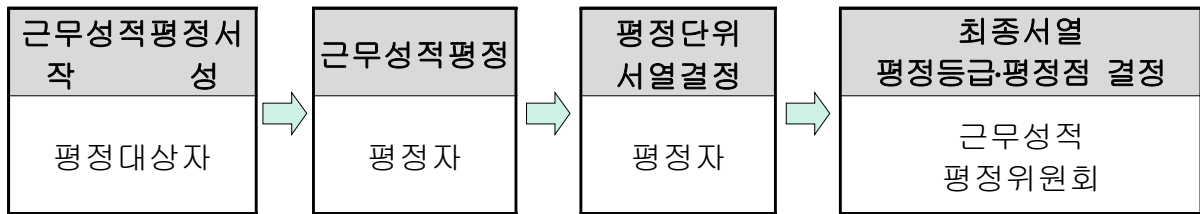
- 평정대상 : 5급 이하 일반직
 - * 임기제공무원 등은 성과평가 실시
- 정기평정기준

구 분	평정기준일	평정대상기간	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	승진후보자 효력발생일
상반기	04. 30.	전년도 11. 1. ~ 04.30.	05. 31.	06. 01.
하반기	10. 31.	05.01 ~ 10. 31.	11. 30.	12. 01.

- 평정자 : (5급)의장, (6급 이하)의회사무과장
- 평정단위 :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별(직렬·직급별) 평정
- 평정요소별 배점 비율 : 근무성적평정 70%, 경력평정 30%
-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
 - 인 원 : 5인 이상 7인 이내
 - ※ 상위 또는 상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음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4)

1) 공무원 개인의 교류의사에 따라 행하는 행태의 교류 (지방자치단체간 전출입, 국가지방간 경력경쟁임용)

○ 평정절차



○ 평정결과 공개

- 평정 완료 이후 인사행정시스템에 본인 순위 공개
- 공개대상은 평정대상 기간내 평정자의 평정결과로 한정

○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결정

- 평정자의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신청
-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평정단위별 평정결과 조정 가능

② 경력평정

○ 계급별 월 경력평정점

- 5급 : 0.33점 (최근 84개월) / 0.04점 (84개월 이전)
- 6급 : 0.39점 (최근 72개월) / 0.04점 (72개월 이전)
- 7급 이하 : 0.47점 (최근 60개월) / 0.05점 (60개월 이전)

○ 경력별 환산율 (공무원경력: 주요사례)

- 갑(100퍼센트) :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
- 을(80퍼센트) :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
- 병(60퍼센트) : 같은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
- 정(30퍼센트) : 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

③ 가산점평정(총 5점 범위 내)

- 자격증 등(직무관련자격증, 언어능력검정시험성적) : 최대0.75점
- 인사교류(1년 이상 계획인사에 따른 교류) : 월0.1점, 최대2.4점
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: 최대 3점

4] 승진후보자 명부

- 작성대상 : 5급 이하 일반직 중 승진요건을 갖춘 자
- 기 준 일 : 5월 31일, 11월 30일
- 작성단위
 - 5급 이하 공무원: 승진임용예정 직급별
 - * 행정직군 중 행정, 세무, 전산6급은 5급 승진후보자명부 통합작성에 따라 직렬을 통합하여 평정
- 효력발생 : 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,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
- 구성비율 : 근무성적평정 70점, 경력평정 30점, 가산점평정 최대5점
- 반영기간 (반영비율은 기간별로 동일하게 반영)

구 분	5급	6~7급	8급이하	비 고
반영기간	최근 3년	최근 2년	최근1년	

7. 균형있는 인사운영

1] 양성평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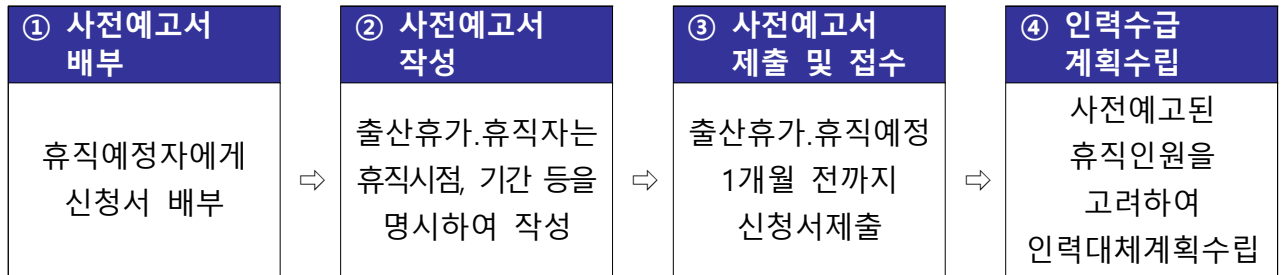
- 남녀공무원이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
- 보직 : 모든 직위에 남녀공무원을 차별없이 보직 부여
- 승진 : 남녀공무원이 차별없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
- 교육 : 장·단기 국외훈련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 시 남녀 차별없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

2] 여성공무원

-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희망보직으로 배치 요구가 있을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배치
-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해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의 예외사유로서 인정

○ 출산휴가·육아휴직 사전예고제

-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시점부터 결원보충 가능



8. 2025년 인력충원 계획

- 채용인원 : 1명[시간선택제임기제 마감(속기)]
- 채용방법 : 경력경쟁채용
- 채용일정 : 2025년 2월 중

9.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훈련

① 교육훈련기간 승진반영(상시학습제도)

- 적용대상 :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
- 승진에 필요한 직급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 시간

적용대상자	최저 이수시간	교육훈련기관 주관 집합교육	필수교육
5급	50시간	7시간	5시간
6급 이하	80시간	7시간	8시간
관리운영직군	50시간	7시간	5시간

*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승진심사에서 제외

* 근속·우대승진의 경우에도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함

※ 재난·재해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업무 수행이 상당기간 지속,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60시간 이상으로 조정 가능

② 시보공무원 및 실무수습 신규자 교육

- 교육대상 : 7급 이하 신규공무원
 - 先교육 後보직을 위하여 임용 전 직무관련 교과목 실무능력 향상
- 교육훈련 : 행정실무 및 현장체험 실시,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일반직 신규자과정 병행
- 인사반영 :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 임용불가

10. 기타 인사관리

①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

* ‘공로연수’ 명칭 변경

- 시행근거 :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의3

제27조의3(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

2.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

- 선발대상 : 20년 이상 근속(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)한 경력직 공무원

구분	기본 연수	희망 연수
5급 이상	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	해당없음
6급 이하	퇴직 잔여기간 6월 이내	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 희망자

※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(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)

- 선발시기 : 상·하반기 정기인사 시
- 지원사항 : 법정급여 및 수당 지급, 합동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

② 명예퇴직

- 신청기간 : 매 홀수달 15일까지(1월, 3월, 5월, 7월, 9월, 11월)
- 명예퇴직일 : 매 짝수달 말일
- 대 상
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
- 명예퇴직수당 지급

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	산 정 기 준
1. 1년 이상 5년 이내	퇴직당시 월봉금액 × 68% × 50% × 정년잔여월수
2. 5년 초과 10년 이내	퇴직당시 월봉금액 × 68% × 50% × $[60 + \frac{\text{정년잔여월수}-60}{2}]$
3. 10년 초과	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(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)

※ 호봉제 월봉금액 : 기본급의 68% / 연봉제 월봉금액 : 연봉월액(성과급제외)의 78%의 68.54%

③ 대우공무원 선발

- 근 거 :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
- 발 령 : 매월 1일에 일괄 선발
- 선발대상 계급별 필요 근무기간

구 분	대상계급	근무기간	비 고
일반직	2급~5급	7년 이상	근무기간은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
	6급~9급	4년 이상	

- 선발요건 :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
- 자격상실 : 승진임용, 강임, 강등
- 혜 택
 - 호봉제 : 월 봉금액의 4.1% 매월 지급
 - 연봉제 : (연봉월액 x 78%) x 4.1% 매월 지급

4 휴직제도

□ 주요 휴직의 종류별 구분표

○ 직권휴직

종류	휴직사유	휴직기간	결원보충 여부	보수지급	경 력 인 정		
					승진 연수	경력 평정	승 급
요양휴직	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	1년 (1년 범위 내 연장 가능)	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	1년 이내 : 봉급의 70% 1년 초과 : 봉급의 50%	제외	제외	제외
공무상 요양휴직		3년 이내	"	전액지급	산입	산입	복직시 산입
군입대 휴 직	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	복무기간	"	미지급	산입	산입	복직시 산입

○ 청원휴직

종류	휴직사유	휴직기간	결원보충 여부	보수지급	경 력 인 정		
					승진 연수	경력 평정	승 급
육아휴직	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 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	한 자녀당 3년 이내	6개월 이상 (출산후가와 연계한 경우 3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)	육아휴직수당, 12개월까지 : 80% 지급 (상한 150만원, 하한 70만원). ※그외 사항은 재정공무원보수업무 처다침참고	최초 1년 (부부 각각 6개월 사용 시 전부, 둘째자녀 부터는 휴직기간 전부)	최초 1년 (부부 각각 6개월 사용 시 전부, 둘째자녀 부터는 휴직기간 전부)	최초 1년 (셋째자녀 부터는 휴직기간 전부)
가사·간병 휴직	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	1년 이내 (재직기간 중 총3년)	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통	미지급	제외	제외	제외
배우자 동반휴직	외국에서 근무·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	3년 이내 (2년 범위 내 연장 가능)	"	"	"	"	"
가사·간병 휴직	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	1년 이내 (재직기간 중 총3년)	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통	미지급	제외	제외	제외
배우자 동반휴직	외국에서 근무·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	3년 이내 (2년 범위 내 연장 가능)	"	"	"	"	"

<별첨 1>

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및 배점

감 점 사 유		감 점	비 고
징 계 처 분			
◦ 정직 이상	1회당	3.0	
◦ 감봉		2.5	
◦ 견책		2.0	
◦ 불문경고		1.0	
◦ 훈계(경고)		0.5	
◦ 주의		0.3	
직 위 해 제		2.0	
복 무 상 태			
◦ 무단 결근	日	0.5	
◦ 무단 조퇴·이석	1회당	0.3	
◦ 무단 지참		0.1	
◦ 행사 불참		0.1	
대민 자세 미흡			
◦ 대민 불친절 진정, 투서	건	1.0	

〈별첨 2〉

육아휴직 · 출산휴가 사전예고서

(육아휴직+출산휴가+육아휴직 사용예정자)

소속			
성명		생년월일	
육아휴직 예정기간	~		
출산휴가 사용(예정)기간	~		
육아휴직 예정기간	~		
위와 같이 육아휴직 · 출산휴가 사전예고서를 제출합니다. 신청일 . . . 신청인 ○ ○ ○ (서명) 담 양 군 의 회 의 장 귀하			

출산휴가 · 육아사전예고서

(출산휴가+육아휴직 사용예정자)

소속			
성명		생년월일	
출산휴가 사용(예정)기간	~		
육아휴직 예정기간	~		
위와 같이 출산휴가 · 육아휴직 사전예고서를 제출합니다. 신청일 . . . 신청인 ○ ○ ○ (서명) 담 양 군 의 회 의 장 귀하			